

예천군 공고 제2026-277호

202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에 예천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설치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6.

예 천 군



- ☐ 공고기간 : 2026. 2. 6. ~ 2. 20.(15일간)
- ☐ 접수마감 : 2026. 2. 20.(금) 18:00까지
- ☐ 접수방법 : 지역경제과 직접방문 제출
- ☐ 제출서류
 1.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신청서 1부.
 2. 2027년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서 1부.
 3. 서약서 및 확약서 각 1부.
- ☐ 문 의 처 : 예천군 지역경제과(☎ 054-650-6238)

붙임 202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계획 1부.

202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계획

1. 사업개요

가. 목 적 :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

나. 사 업 명 : 202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다. 대 상 지 : 예천군 일원

라. 사업내용

1) 예천군 관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사업 지원대상 규모와
내용에 맞는 에너지원 발굴

2) 사업의 타당성 등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제시

3) 에너지원 종별 적격업체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마.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7. 12. 31.(공모사업 선정 시)

바.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32% 자부담 18%

※ 비율 조정(변동) 될 수 있음

사. 기타사항 : 본 공고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
에너지공단의 전년도(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
지원) 수요조사 공고 내용을 준용하나 해당 사업의 당해
연도(2027년) 공고의 변동사항 발생 시 그 내용을 준용함

※ 실적증빙 등의 추가 요구사항 준수 필요

2. 신청자격

가.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업, 모니터링기업, 설계·감리기업 합동으로
‘컨소시엄 참여기업’ 구성

※ 설계·감리 : 참여 에너지원에 준하는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및
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ex) : 태양광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 및 감리업을 등록한 자
태양열, 지열, 모니터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3에 의한 엔지니어링업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신고한 자

※ 모니터링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RTU 제조업체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업체는 반드시 참여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3. 선정방법

가. 평가지표에 따라 계량평가(70%) + 비계량평가(30%) 총합산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

나. 비계량평가는 발표 없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서류로 평가

다.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융복합지원사업 참여 실적 > 모니터링능력 > 지역기업 참여비율이 높은 순으로 컨소시엄 선정

라. 본 공고에 의해 선정된 컨소시엄이 자격 미달 등으로 선정 결과가 변경될 경우 재공고

※ 참여 컨소시엄이 1개인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시 선정.

4.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 수요조사 공고 내용을 준용하나 해당사업의 당해연도(2027년) 공고의 변동사항 발생 시 그 내용을 준용함

※ 실적증빙 등의 추가 요구사항 준수 필요

나. 제안서는 컨소시엄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제출, 수정, 변경, 보완 불가함

다. 제출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라.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여건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마.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컨소시엄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사업비 중 지역기업 사업비 지분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작성할 것
(50% 미만일 경우, 도비 및 군비 지원 제외)

- 붙임 1.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업체 공모 신청서 1부.
2. 2027년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서 1부.
3. 컨소시엄 서약서 1부
4. 참여기업 평가기준 1부.
5.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1부. 끝.

【붙임 1】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회사명	(인)	대 표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회사명	(인)	대 표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회사명	(인)	대 표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회사명	(인)	대 표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회사명	(인)	대 표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상기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컨소시엄 참여기업에 선정되고자 신청하며 선정기관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제출서식(사용인감계, 서약서, 협약서) 각 1부.

예천군수 귀하

【붙임 2】

2027년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 자	소 속	지역경제과	전 화		
	성 명		핸드폰		
	F a x	054-650-6099	E-mail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지원대상 모델	모델번호		모델명		
4. 설치장소	○ 장 소 명 : ○ 소 재 지 : 시(군·구) 리(동)				
5.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 (기관명) - (역할)				
6. 세부사업	구 분		호수 (개소)	용 량 (kW, m ²)	설치대상 (주택·상업·공공건물)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합 계				

7. 사업비 신청내역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 간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설 계 비					
모니터링비					
합 계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설 계 비			
모니터링비			
합 계			

8. 사업내용

가. 인프라

- 사업 필요성
- 지역특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해결방안

나. 참여기관

- 전체 참여기업 구성의 적정성
- 참여기업별 사업추진 역할, 사업 추진계획

다. 사업추진

-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 에너지원별 시공계획
- 당해연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
-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 공모 선정 전략
- 대단위 사업 추진을 위한 노하우

라. 사후관리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과 점검주기
- A/S 발생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 A/S 관리대장(접수·처리) 등 수행자료

마. 융·복합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연간 에너지 생산량과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 에너지 이용 편익과 환경개선 효과 등

【붙임 3】

서 약 서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군이 결정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연번	업체명	업종	주소	대표자명	날인
1					
2					
3					
4					
5					

예천군수 귀하

【붙임 4】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참여기업 평가기준

I. 배점비율 및 평가 항목

○ 배점비율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계 량 (70)	시공 능력 (20)	기술인력	6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근무경력
		신규 고용인력	4	신규 고용인력 및 청년 고용 실적
		시공실적	6	최근 3년간 신재생 시공기업 시공실적
		신용도	4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경영상태
	모니터링 능력 (10)	REMS 연동 개소수	3	모니터링업체의 통합모니터링(REMS) 연동 개소수
		REMS 연동률(%)	3	모니터링업체의 통합모니터링(REMS) 연동률(%)
		REMS 태양광外 정상 연동 개소수	4	모니터링업체의 통합모니터링(REMS) 태양광 外 설비의 정상연동 개소수
	기타 (40)	융복합지원사업 실적	1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실적
		설계.감리의 수행능력	10	설계, 감리의 사업 업무수행에 대한 효율성
		에너지원 다양성	5	에너지원의 다양성
		지역기여도	10	지역기업 참여도
비 계 량 (30)	인프라 (9)	사업 필요성	3	지역특성 및 융복합지원사업 필요성
		지역특성	3	사업대상지 사전조사 반영도
		민원, 인 · 허가사항	3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의 적정성
	참여기관 (기업) (6)	참여기관(기업)적정성	3	전체 참여기관 구성의 적정성
		참여기관(기업)별 역할 계획	3	전체 참여기관별 사업추진 역할, 사업 추진계획
	사업 추진 (8)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2	지역특성을 감안한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의 적정성
		에너지원별 시공계획	2	에너지원별 시공계획의 적정성
		당해연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	2	당해연도 사업 완료를 위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컨소시엄 차별성	2	컨소시엄만의 차별화된 사업추진 계획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7)	사후관리 계획	4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3	에너지 생산량 및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지자체활성화 관련 기대효과 등
합계			100	

* 계량평가 : 참여기업의 평균 점수로 계산(증빙자료)

* 비계량평가 : 서면 평가

II. 계량평가 배점기준(70점)

① 시공능력 (20점)

1. 기술인력 배점기준 (6점)

1-1. 기술인력 보유 현황 (3점)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 점		
		태양광	태양열	기 타
3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			
	① 7인 이상	3.0	3.0	3.0
	② 6인	2.6	2.6	2.6
	③ 5인	2.2	2.2	2.2
	④ 4인	1.8	1.8	1.8
	⑤ 3인	1.4	1.4	1.4
	⑥ 2인 이하	1.0	1.0	1.0
	나. 기능사			
	① 7인 이상	2.0	2.0	2.0
	② 6인	1.8	1.8	1.8
	③ 5인	1.6	1.6	1.6
	④ 4인	1.4	1.4	1.4
	⑤ 3인	1.2	1.2	1.2
	⑥ 2인 이하	1.0	1.0	1.0

* 산업기사 이상 및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1-2. 기술인력 근무경력 (3점)

구분	태양광	기 타	배 점
3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가. 산업기사 이상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800개월 이상	① 700개월 이상	3.0
	② 600개월 이상~800개월 미만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2.5
	③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③ 3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2.0
	④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이상~300개월 미만	1.5
	⑤ 200개월 미만	⑤ 100개월 미만	0.5
	나. 기능사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나. 기능사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700개월 이상	① 600개월 이상	2.0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②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1.5
	③ 2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1.0
	④ 200개월 미만	④ 200개월 미만	0.5

* 산업기사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신규 고용인력 (4점)

-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기술인력당 2점, 청년 고용*일 경우 2점(중복 인정 불가)
 - 신규 고용인력(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 공고일 이전 고용인원에 한하여 인정
(4대보험, 자격증 등 기술인력 제출 자료 확인)

3. 시공실적 배점기준 (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
 - *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센터 사업의 경우 설치확인서로 제출 가능 (설치확인서의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
- 시공실적 배점은 참여제안을 하는 시공기업의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6-061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1. 설치용량 (3점)

태양광(kW)	태양열(m ²)	지열(kW)	수열(kW)	기타(kW, m ²)	배점
3,000이상	6,000이상	6,000이상	2,000이상	100이상	3.0
2,000~3,000미만	4,000~6,000미만	4,000~6,000미만	1,500~2,000미만	50~100미만	2.5
1,000~2,000미만	2,000~4,000미만	2,000~4,000미만	1,000~1,500미만	20~50미만	2.0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1,000~2,000미만	500~1,000미만	10~20미만	1.5
500미만	1,000미만	1,000미만	100~500미만	10미만	1.0

3-2. 설치개소 (3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	기타	배 점
300 이상	200이상	50이상	4이상	100이상	3.0
100~300미만	100~200미만	30~50미만	3	50~100미만	2.5
50~100미만	50~100미만	10~30미만	2	20~50미만	2.0
50 미만	50미만	10미만	1	20미만	1.0

4. 기업신용도 배점기준 (4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사업계획서 접수일 이후인 것에 한함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주)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구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4점 한도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4.0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3.0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B0, BB-	2.0
	기업신용평가등급 B+, B0, B-	1.0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미제출	0

② 모니터링 능력 (10점)

모니터링업체의 REMS 연동 개소수 및 연동률

배점	(1.0)	(2.0)	{3.0 (★4.0)}
REMS 연동 개소수(3점)	31위 이하	21~30위	1~20위
REMS 연동률(%) (3점)	31위 이하	21~30위	1~20위
★태양광 외 에너지원 REMS 정상연동 개소수	31위 이하	21~30위	1~20위

- * REMS 홈페이지(<https://rems.energy.or.kr> - 게시판 - 연동률) 게시된 자료 적용
- * 연동 개소수와 연동률은 공고 당월부터 접수 전월까지 각 월말 기준 수치의 평균값 적용
- * REMS 연동율(%)은 최소 50개소 이상 연동 모니터링업체에 한해 선정

③ 기 타 (40점)

1. 융·복합지원사업 실적 (15점)

- 도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실적증명자료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 설계·감리 포함
- 단일 에너지원 공동 컨소시엄인 경우 상위 업체의 실적 적용

60회 이상	21회 이상 60회 미만	20회 미만
15.0	10.0	5.0

2. 설계·감리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10점)

전기, 기계, 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을 모두 구비한 도내업체	2개의 설계 및 감리업체가 공동으로 참여	3개 이상의 설계 및 감리업체가 공동으로 참여
10.0	7.0	4.0

3. 에너지원 다양성 (5점)

3개 이상 에너지원으로 컨소시엄 구성	2개 에너지원으로 컨소시엄 구성	2개 미만 에너지원으로 컨소시엄 구성
5.0	3.0	1.0

4. 지역기여도 (10점)

- 모집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점 소재지를 뜻함
- 증명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모니터링, 설계, 감리 포함
- 단, 특정 에너지원 기업이 지역에 본사가 없거나 전국에 5개사 미만인 경우 제외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75% 이상이 경상북도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50% 이상이 경상북도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50% 미만이 경상북도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10.0	5.0	3.0	1.0

Ⅲ. 비계량평가 배점기준 (3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배점 기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합계	11					
인프라 (9)	사업 필요성	3	2	1	0.5	0
	지역특성	3	2	1	0.5	0
	민원, 인 · 허가사항	3	2	1	0.5	0
참여기관(기업) (6)	참여기관(기업)적정성	3	2	1	0.5	0
	참여기관(기업)별 역할, 계획	3	2	1	0.5	0
사업추진 (8)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2	1.5	1	0.5	0
	에너지원별 시공계획	2	1.5	1	0.5	0
	당해연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	2	1.5	1	0.5	0
	컨소시엄 차별성	2	1.5	1	0.5	0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7)	사후관리 계획	4	3	2	1	0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3	2	1	0.5	0

【붙임 5】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1.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 (예시) 2018 삼척시 광진마을, 죽동마을 에너지자립마을 : 5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여 사용 중(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2.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 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

* (예시) 2015년 충남 죽도 에너지자립섬 (완료), 2015년 인천 지도 에너지자립섬 (완료)

3.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 (예시) 2017 대구 테크노폴리스 에너지자립타운 : 산업단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여 구역 내 에너지자립을 제고(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4. 모니터링 고도화

- (내용) '13~17년 융복합지원으로 설치 완료한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상이한 모니터링 방식을 공단의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니터링 고도화 추진

* 융복합사업 외 타 보급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은 모니터링 고도화 대상이 아님

* (예시 1) 2014년 OO시 융복합지원사업 완료

① 태양광, 태양열은 자가 모니터링 ② 지열은 일부 자가모니터링(전력사용량 비계측)

☞ 2021년 OO군 융복합지원사업 모니터링 고도화사업

* (예시 2) 2017년 OO군 융복합지원사업 완료

① 태양광, 태양열 등 웹모니터링

☞ 2021년 OO군 융복합지원사업 모니터링 고도화사업

5. 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

○ (내용) '지방분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선정 주민자치회' 또는 사업추진 대상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기피·혐오시설 또는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환경개선과 주민수익을 동시에 구현

* (특징) 상기의 융복합지원 모델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문화·관광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유치

(주민수익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 등은 국비 지원 없음, 전액 컨소시엄 부담)

* (예시) 2020년 ○○군 융복합지원사업 신청(농촌태양광 등과 연계한 주민수익창출 사업)

6. 계간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 (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 (예시) 2015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계간축열조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